

# 프랑스의 회사분할 법제에 관한 연구: 분할의 효력을 중심으로\*

노혁준\*\*

## 차 례

- I. 서 론
- II. 프랑스 상법상 분할의 개관
  - 1. 프랑스법상 분할의 개념 및 유형
  - 2. 프랑스 분할법제상 절차적 규제
- III. 분할에 의한 포괄승계의 범위와 그 한계
  - 1. 분할의 일반적 효력
  - 2. 분할시 이전대상 선택의 범위
  - 3. 각종 제재의 승계 여부
- IV. 분할의 회사채권자에 대한 영향
  - 1. 협의의 분할인 경우
  - 2. 일부영업의 포괄출자인 경우
  - 3. 우리 법체제와의 비교
- V. 결 론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10학년도 학술연구비의 보조를 받았음.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부교수 (hjoon@snu.ac.kr).

## I. 서론

일반적으로 회사분할은 합병의 반대현상으로서 하나의 회사가 영위하던 영업이 다수의 회사로 분리되는 것을 가리킨다. 기존 회사가 소멸하는지, 분할대가로 다수의 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사원권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나타날 수 있으나, 기능적 측면에서의 회사분할 제도는 분사를 통한 전문화, 효율화를 추구한다는 공통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다.

우리 상법은 1998년 12월에 제4장 제4절을 신설하여 주식회사의 분할 제도를 도입한바 있다. 이는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프랑스 상법에 그 연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프랑스는 1966년 처음 회사분할(la scission)을 법제화시킨 이후, 1982년 EU 제6지침<sup>1)</sup> 제정과정 등을 통해 유럽에서의 분할법제에 관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실제 프랑스에서도 그동안 분할 실행사례는 많지 않았다. 즉 합병과 달리 세무상, 회계상 특례가 마련되지 않은 탓에 거래에 많은 비용이 수반되므로 기업들은 이를 기피해 왔다. 그러던 중 1995년 1월 1일부터 일정요건을 갖춘 분할에 특례를 부여하는 규정이 효력을 발하게 됨으로써,<sup>2)</sup> 비로소 분할사례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1996. 6. 21. Chargeur사가 Chargeurs International사와 Pathé사로 분리된 것과 2001. 6. 30. Eridania Béghin-say사가 Eridania Béghin-say사, Cereol사, Cerestar사 및 Provimi사로 분사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sup>3)</sup> 또한 후술하듯이 우리나라의 물적분할에

1) Sixth Council Directive 82/891/EEC of 17 December 1982

2) 프랑스 세법(CGI: Code général des impôts) 제210B조에 따르면, 특칙 적용의 전제요건으로서 주주들은 균등하게 배분된 분할신주를 적어도 3년간 보유하기로 분할계획상 약속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의무의 적용을 받는 자는 분할의 승인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 주식 의결권의 5% 이상을 갖는 대주주이거나, 이러한 분할 승인일 이전 6개월 내에 직, 간접적으로 회사경영, 행정, 감독기능(des fonctions de direction, d'administration ou de surveillance)을 수행한 자로서 의결권의 0.1% 이상을 갖는 주주(이러한 주주들의 지분 합계는 회사자본의 20% 이상)에 한한다. 상세한 내용은 Patrice Couturier, Cessions & acquisitions d'actifs: Restructurations d'entreprises, EFE (2010), p.176.

준하는 일부영업의 포괄출자(l'apport partiel d'actif soumis au régime des scissions)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분할관련 다양한 쟁점에 관한 판례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 프랑스 분할법제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1998년의 제도 도입 이후 분할사례가 잦아지고 있다.<sup>4)</sup> 이에 따라 분할에 관련된 분쟁, 특히 분할시의 채권자보호와 과징금 등의 승계가능성을 둘러싼 다툼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분할법제의 원형이 되는 프랑스에서의 논의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 분할법제의 운용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하의 논의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먼저 프랑스 분할법제를 개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그 개념, 유형 및 절차적 규제를 살펴본다(제II장). 다음으로 프랑스 법제상 분할의 효력 중 포괄승계의 범위 및 그 한계(제III장), 제3자 특히 회사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제IV장)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프랑스 상법상 회사의 유형은 매우 다양한바, 여기에서는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식회사(SA: Société anonyme)와 유한회사(SARL: Société à responsabilité limitée)를 중심으로 논의한다.<sup>5)</sup>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 몇 가지 용어를 정의해 두고자 한다. 분할을 실행하는 기존회사는 프랑스 문헌상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분할회사”라고 부르기로 한다. 분할로 인해 위 분할회사의 영업을 이전받게 되는 회사는 “승계회사”라고 부른다. 따라서 이 글에서 승계회사는 기존의 회사일수도 있고, 분할로 인해 새로이 신설되는 회사일 수도 있다.

3) 그밖에 프랑스의 분할사례에 관하여는 Pierre-Yves Chabert, La figure de la scission partielle en droit français, *Revue des sociétés* n° 4 (2005), p.759 참조.

4) “브랜드 독립 통해 세너지(senergy) 효과 노린다” 이코노믹 리뷰 2010. 1. 26.자 기사 (<http://er.asiae.co.kr/erview.htm?idxno=2010012109515512411>에서 검색가능. 최종 접속일 2010. 10. 28. 이하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마찬가지로임); ”시너지 효과? 이제 ‘세너지 효과’다”, 조선일보 2009. 10. 8.자 기사 ([http://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0/07/2009100701728.html](http://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0/07/2009100701728.html)에서 검색가능)

5) 2007. 1. 1.을 기준으로 민사회사(Sociétés civile)를 제외한 회사 총수 1,891,348개 중 유한회사는 1,550,637개사, 주식회사는 133,158개사에 이르고 있다. Maurice Cozian, Alain Viandier et Florence Deboissy, *Droits des sociétés* (22<sup>e</sup> éd.), LexisNexis Litec (2009), p.3.

## II. 프랑스 상법상 분할의 개관

### 1. 프랑스법상 분할의 개념 및 유형

#### (1) 프랑스 상법상 협의의 분할(la scission)

프랑스 상법(Code de Commerce)이 규정하는 원래의 분할(la scission)은 분할회사가 분할을 통해 소멸되는 이른바 소멸분할(또는 완전분할)을 뜻한다. 상법 제236-1조 제2항은 “한 회사는 분할을 통하여 그들의 사업재산(patrimoine)을 다수의 기존 또는 신설되는 회사에 이전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236-3조 제1항은 “... 분할은 소멸되는 회사의 청산 없는 해산을 발생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EU 제6지침도 프랑스 상법과 마찬가지로 분할회사가 소멸되는 소멸분할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강학상 위 분할의 개념적인 징표로서 (i) 분할회사가 적극, 소극 사업재산을 일체로 다른 기존 또는 신설되는 회사들에게 이전하고, (ii) 분할 결과 분할회사는 청산 없이 해산되고, (iii) 승계회사들의 지분, 주식은 분할회사의 기존주주들에게 분배된다는 세 가지가 언급되고 있다.<sup>6)</sup> 분할시에도 일부 분할교부금이 제공될 수 있지만, 분할시 분배되는 지분, 주식의 10%를 넘으면 상법상의 분할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프랑스 상법 제236-1조 제4항). 이렇듯 소멸분할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프랑스법상 분할은 사업재산을 이전하는 회사가 소멸한다는 측면에서 합병(la fusion)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포괄적 승계효, 실행절차 등 대부분의 조항에 있어서 합병과 분할을 동일 측면에서 논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즉 프랑스 상법 회사편 제6장은 그 표제 자체가 “합병 및 분할(De la fusion et de la scission)”로서 합병과 분할을 함께 규정하는 형태이다.

#### (2) 일부영업의 포괄출자(l'apport partiel d'actif soumis au régime des scissions)

위 전형적인 분할과 달리 분사 이후에도 분할회사를 존속시켜야 할 필

6) 프랑스 상법 제236-1조 제2항 및 제4항, 제236-3조 제1항 참조. Pierre-Yves Chabert, *op. cit.*, p.761은 이를 영미법상의 split-up에 해당한다고 본다.

요성이 있는 경우도 있는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프랑스 상법 제236-22조7)가 활용되고 있다. 이 조항은 “그 자산(aktif)의 일부를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회사와 그 승계회사는 이러한 거래가 상법 제236-16 내지 제236-21의 조항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상호 합의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원래 자산의 현물출자(l'apport en nature)는 상법의 일반적인 출자 조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부채가 아닌 자산만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는 필요하지 않은 반면, 개별적인 자산이전 절차를 밟아야 한다.8) 그런데 위 제236-22조에 의한 일부영업의 포괄출자(l'apport partiel d'aktif soumis au régime des scissions)는 위 일반적인 현물출자와 달리 부채를 포함하는 지점의 영업(une branche autonome d'activité)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9) 판례, 학설상 포괄승계효10)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회사의 주요자산이 출자되는 경우에는 (단순한 자산이전 방식에 의하는 것보다) 위 일부영업의 포괄출자 방식이 주주 등 이해관계자 보호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기도 하다.11) 프랑스 상법상 원칙적인 분할형태와 비교할 때 일부영업의 포괄출자 방식은 가장 큰 특징은 분할회사가 분할실행 이후에도 존속한다는 점이다. 포괄출자의 대가인 분할신주에 관하여, 분할회사는 이를 그대로 보유하거나 재차 그 주주들에게 분배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12)

이 글에서는 프랑스 상법이 규정하는 분할과 일부영업의 포괄출자를

7) 실제 이 조항은 주식회사에 관한 것이고, 프랑스 상법 제236-24조는 유한회사에 관하여 유사한 조항을 두고 있다.

8) Paul Le Cannu et Bruno Dondero, *Droit des sociétés* (3<sup>e</sup> éd.), Montchrestien (2009), p.1051.

9) Philippe Merle, *Droit commercial: sociétés commerciales* (13<sup>e</sup> éd.), Dalloz (2009), p.876

10) 후술하는 제III장 1. 참조.

11) 프랑스의 금융시장감독청(AMF: 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은 회사 주요자산 출자시에는 가급적 상법 제236-22조에 의하여 분할법제 하에서 실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Philippe Merle, *op. cit.*, p.898.

12) Philippe Merle, *op. cit.*, p.898. 다만 이에 대하여는 분할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경우를 별도로 “scission partielle로 구분하는 견해도 있다. Pierre-Yves Chabert, *op. cit.*, pp.762-763. 이에 따르면 이 scission partielle은 영미법상의 spin-off에 해당하고 일부영업의 포괄출자는 영미법상의 hive-down에 해당한다고 본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프랑스법상 (광의의) 회사분할은 이처럼 상법의 규제를 받는다. 합병, 분할에 관련된 EU 지침들은 모두 위 상법 체제내로 흡수되어 있다.<sup>13)</sup> 구체적으로 프랑스 상법 제236-1조에서 제236-7조까지는 상사회사(société commercial) 전반에 규정되는 합병, 분할의 통칙이고, 이후 제236-8조 내지 제236-22조는 주식회사(SA)에 관하여, 제236-23조 및 제236-24조는 유한회사(SARL)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일부영업의 포괄출자인 경우 위 일반적인 합병<sup>14)</sup>, 분할과 달리, 주식회사 사이에서 또는 유한회사 사이에서만 명문의 근거조항이 있으므로(프랑스 상법 제236-22조, 제236-24조), 다른 유형의 회사들이 활용하기에는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다.<sup>15)</sup>

### (3) 우리 법체제와의 비교

우리 법규상으로도 위 프랑스 상법상 분할과 일부영업의 포괄출자가 모두 가능하다. 우리 상법 제530조의2조는 분할회사 자체의 소멸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제한을 하지 않으므로 분할회사가 소멸하는 형태의 소멸 분할과 존속하는 형태인 존속분할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어 있다. 다만 실제로 소멸분할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프랑스의 일부영업의 포괄출자와 유사한 형태가 많이 나타난다. 이 때 분할회사가 분할신주를 주주들에게 분배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인적분

---

13) 예컨대 앞서 언급된 제6지침은 프랑스에서 loi n° 88-17 du 5. janvier 1988로 반영되었고, 국제적 합병에 관한 directive n° 2005/56/CE du 26 octobre 2005 역시 프랑스에서 loi n° 2008-649 du 3 juillet 2008로 반영된바 있다. 이 2008년 개정은 주로 주식회사(SA)간의 합병, 분할에 관련하여 이루어졌다. 주요내용은 주주 전원일치에 의한 합병검사인 배제, 간이합병절차의 단순화 등이었다. 그밖에 최근에는 합병, 분할시 세제에 관한 지침이 통과된 바 있으나 (Directive 2009/133/CE du Conseil du 19 octobre 2009 concernant le régime fiscal commun applicable aux fusions, scissions, scissions partielles, apports d'actifs et échanges d'actions intéressant des sociétés d'États membres différents, ainsi qu'au transfert du siège statutaire d'une SE ou d'une SCE d'un État membre à un autre), 이 글에서는 분할 관련 세제 등에 관하여는 상세히 다루지 않기로 한다.

14) 특히 합병의 경우 명문으로 다른 형태의 회사간 합병가능성을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 상법 제236-2조 제1항.

15) Paul Le Cannu et Bruno Dondero, *op. cit.*, p.1051.



할에, 이를 그대로 보유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물적분할(상법 제530조의 12)에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다.

## 2. 프랑스 분할법제상 절차적 규제

### (1) 분할검사인(commisnaire à la scission)과 현물출자검사인(commisnaire aux apports)

프랑스 상법은 분할 등의 경우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먼저 분할시에는 하나 또는 수인이 분할검사인이 선임된다(프랑스 상법 제236-16조, 제236-10조, 데크레<sup>16)</sup> 제236-6조). 법원이 이를 선임하게 되며,<sup>17)</sup> 분할검사인의 주된 직무는 분할시 주식가치에 대한 평가의 적정성과 교환비율의 형평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다만 (i) 분할관련 모든 회사 주주들이 만장일치로 분할검사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결의한 경우(프랑스 상법 제236-10조 제2항), (ii) 분할에 의하여 새로운 주식회사를 만드는데, 각 신설 주식회사가 분할회사의 출자만으로 설립되는 것이고 각 신설회사의 주식이 기존 분할회사의 주주들에게 비례적으로 배정되는 경우(프랑스 상법 제236-17조)에는 위 분할검사인의 선임을 생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할검사인의 선임 및 예외 등의 조항은 일부영업의 포괄출자에 있어서도 그대로 준용된다(프랑스 상법 제236-22조).

원래 프랑스 상법상 현물출자에 의한 회사신설인 경우 현물출자검사인(commisnaire aux apports)의 조사절차를 밟아야 하는바(상법 제225-147조),<sup>18)</sup> 분할이나 일부영업의 포괄출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현물출자검사인이 선

16) 데크레(Décret)는 행정입법(réglement)의 일종으로서 위의 데크레는 상법전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하기 위한 적용 데크레(décret d'application)에 해당한다. 프랑스의 법령체계와 입법절차에 관하여는 박영도, 「법령입안기준개발에 관한 연구: 프랑스의 법령입안심사기준」, 법제연구원, 2003, 7-36쪽 참조.

17) 실제로는 분할 당사회사들이 동일한 검사인의 선임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경우 하나의 보고서가 작성되어 절차 진행이 더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상법 데크레 제236-6조 제2항, Philippe Merle, *op. cit.*, p.891 참조.

18) 이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자산과대평가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다. Bruno Dondero, *Droit des sociétés*, Dalloz (2009), p.48 참조.

임되어야 한다. 동일인이 분할검사인이자 현물출자검사인으로 지정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각기 별도의 보고서를 구별하여 작성해야 하며<sup>19)</sup> 그 중 분할검사 보고서만이 등기소에 비치된다. 위 분할검사인 선임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현물출자검사인은 현물출자검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sup>20)</sup>

나아가 구 증권거래위원회(COB: la Commission des opérations de bourse)는 합병의 경제적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외부전문가로부터 공정성 보증의견(attestation d'équité)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었다.<sup>21)</sup> 여기에는 가격의 적정성 및 거래의 목표와 내용에 관한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담기게 된다.<sup>22)</sup>

## (2) 주주총회의 승인

회사의 분할 또는 일부영업의 포괄출자에는 관련당사회사들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승인이 필요한바, 결의요건은 정관변경의 그것과 동일하다(프랑스 상법 제236-2조 제2항, 제236-22조, 제236-16조, 제236-9조). 종류 주주총회가 있는 경우 그 승인도 받아야 한다(프랑스 상법 제236-9 제2항 참조).

적절한 판단을 돕기 위하여 주주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된다. 먼저 분할계획서(projet de scission)가 각 회사 본점소재지의 등기소에 비치된다. 여기에는 상법 데크레 제236-1조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일정, 목적, 이전대상인 회사재산 등이 표시된다(프랑스 상법 제236-6조).<sup>23)</sup> 각 회사의 이사회 또는 경영자회(le conseil d'administration ou le directoire)는 분할의 상세한 내용을 다루는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프랑스 상법 제236-9조 제4항, 데크레 제236-5

19) Paul Le Cannu et Bruno Dondero, *op. cit.*, p.1028.

20) Maurice Cozian, Alain Viandier et Florence Deboissy, *op. cit.*, p.615.

21) *Bulletin mensuel de la COB*, n° 296.nov. 1995. p.27.

22) 그 상세한 내용에 관하여는 Thierry Granier, La procedure d'attestation d'équité, *Revue des sociétés* n° 4/1997 (1997) p.699 이하 참조.

23) 나아가 분할계획은 일정 자격을 갖춘 신문에 공고된다. 상법 데크레 236-2조.



조),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본 분할검사인과 현물출자검사인의 보고서도 주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모든 주주들은 회사 본점에서 적어도 주주총회 결의일 한달 이전부터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분할계획서, 위 이사회 등의 보고서, 분할검사인의 보고서, 일정한 회계관련 서류 등을 열람, 복사할 수 있다(프랑스 상법 시행령 제236-3조)

### (3) 적법성 확인보고서(déclaration de conformité)

이는 1988. 1. 5. 상법 개정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프랑스 상법 제 236-6조 제3항에 의하면 분할 참여 회사는 분할 실행을 위해 이루어진 행위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게을리하는 경우 분할이 무효화될 수 있다. 이를 접수한 등기사무원(greffier)은 스스로의 책임 하에 그 내용을 확인하게 된다.

### (4) 우리 법체제와의 비교

위 프랑스 분할절차의 특징은 다양한 외부인의 개입을 통하여 실질적인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규제는 각종 비용과 절차의 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프랑스 상법이 2008년 법개정을 통해 분할검사인의 선임을 배제할 수 있는 예외를 추가한 것도 이러한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하면 우리의 분할법제는 외부개입의 정도가 강하지 않다. 거래 종결 후 별도의 적법성 확인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분할검사인 제도도 도입하고 있지 않다. 이는 합병에 있어서 별도의 검사인 제도를 두지 않는 것과 대응하는 것이다.

다만 분할에 의하여 회사신설이 이루어지는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상법 제299조 제1항에 따른 법원에 의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우리 상법 제530조의14 제2항 후단은 위 프랑스 상법 제 236-17조를 모델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분할회사의 출자만으로 회사가 신설되고 분할회사의 주주들에게 기존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신주

가 배정되는 경우, 프랑스는 분할검사인의 선임을 면제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법원에 의한 조사를 면제하고 있다. 우리 상법상 특례에 대하여, 분할검사인의 선임이 면제되더라도 현물출자인에 의한 검사는 유지시키는 프랑스의 법제와 비교할 때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sup>24)</sup> 하지만 우리 상법상 특례가 적용되는 사례에서는 통상 불공정한 가치평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일률적인 외부개입은 불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III. 분할에 의한 포괄승계의 범위와 그 한계

#### 1. 분할의 일반적 효력

프랑스 상법 제236-3조는 협의의 분할의 경우 분할의 효력발생일에 분할회사의 사업재산(patrimoine)이 승계회사에게 포괄승계(transmission universelle)된다고 규정한다. 한편 일부영업의 포괄출자인 경우 위와 같은 규정이 별도로 없어서 과연 포괄승계를 인정할 수 있을지에 관해 과거 논란이 있었다.<sup>25)</sup> 원래 프랑스법상 법인격과 사물과의 밀접한 관련성이 중시되어 왔는바 사업재산의 포괄적인 승계는 그 인격이 소멸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여겨져 왔다. 합병이나 위 협의의 분할이 그 전형적인 예인 반면, 일부영업의 포괄출자는 분할회사가 그대로 존속하므로 전통적인 포괄승계 개념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 프랑스 상법 제236-22조가 일부영업의 포괄출자에 협의의 분할의 절차에 관한 규정만을 준용할 뿐, 그 효력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는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대목이다.<sup>26)</sup> 그러나 오늘날 판례와 거의 모든 학설은 일부영업의 포괄출자에 대하여도 포

24) 이철송, 회사법강의(제14판), 박영사 (2007), 885쪽.

25) Jean-Claude Hallouin, Apport partiel d'actif: Régime des scissions, Solidarité entre sociétés apporteuse et bénéficiaire, *Bulletin Joly Sociétés: Actualité du droit des sociétés*, 01 avr. 2007 n° 4 (2007), p.494 참조.

26) 그밖에 일부영업의 포괄출자에 포괄승계효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으로서 Michel Jeantin et Alain Viandier, *Actualité/ Droit des sociétés/ Bourse, Revue de droit bancaire et de la bourse* n° 8 juillet/août (1988), p.131.

괄승계효를 인정하고 있다.<sup>27)</sup>

위 포괄승계 법리에 따르면 사업재산은 그 효력발생일의 상태대로 이전되는 것이므로(프랑스 상법 제236-3조 제1항 참조), 그 효력발생일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프랑스 상법 제236-4조에 따르면 (i) 분할로 인해 새로운 회사가 신설되는 경우 그 회사(복수회사의 신설인 경우 그 마지막 신설회사)의 등록일이 효력발생일이고, (ii) 회사신설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후의 주주총회 결의일이 효력발생일이지만, 분할계약(*le traité de scission*)에서 특정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sup>28)</sup>

포괄승계효가 인정되므로 계약관계, 자산 등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이 승계회사로 이전된다. 예컨대 분할회사의 채권은 프랑스 민법 제1690조의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분할 효력발생일에 자동적으로 승계회사로 이전된다.<sup>29)</sup> 물론 계약관계의 성질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개성이 중요시되는 경우에는<sup>30)</sup> 이러한 포괄승계가 제한된다.<sup>31)</sup> 또한 자산 중 특정한 공시(*publicité*)가 요구되는 경우에도 포괄승계효가 제한받게 된다. 즉 부동산, 산업재산권과 같은 경우에는 등기, 등록 절차를 마친 다음에야 비로소 승계회사가 분할로 인한 권리변동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sup>32)</sup> 그밖에 과징금 등 각종 공적 의무의 승계여부에 관하여는 항을 달리하여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적분할이든 물적분할이든, 소멸분할이든 존속분할이

---

27) Cass. Com., 16 févr. 1988, n° 86-19.645 등; Philippe Merle, *op. cit.*, p.901.

28) 다만 이 날짜는 승계회사(들)의 당해 회계연도 말일보다 늦어져서는 안 되고, 분할회사의 직전 년도 회계연도 말일보다 앞당겨져서도 안 된다.

29) Philippe Merle, *op. cit.*, p.899; Paul Le Cannu et Bruno Dondero, *op. cit.*, p.1039.

30) 판례는 일반적으로 계약상대방의 개성이 중시되는 계약인 경우(*intuitu personae*), 포괄적 승계가 제한된다고 본다.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로는 Matthieu Dubertret, *L'intuitus personae dans les fusions*, *Revue des sociétés* n° 4/2006 (2006) 참조.

31) 예컨대 보증계약(*cautionnements*)인 경우 (i) 분할회사를 피보증인으로 했던 경우 피보증인의 교체는 중요한 사건이므로, 보증인은 분할효력일 이전까지 발생한 채무에 관하여만 보증책임을 지면 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반면 (ii) 분할회사가 보증채권을 갖고 있었던 경우는 그 이전 여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다(Paul Le Cannu et Bruno Dondero, *op. cit.*, p.1043은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고 보는 반면, Philippe Merle, *op. cit.*, p.903은 포괄승계된다고 본다).

32) Philippe Merle, *op. cit.*, p.896.

든 분할에는 모두 포괄승계 효력이 인정된다(상법 제530조의 10, 제530조의 12). 다만 합병에서처럼 분할회사 소유 부동산 등의 경우에도 개별 이전등기절차 없이 소유권이 이전한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라는 점에서,<sup>33)</sup> 프랑스의 분할법제와는 차이가 있다.

## 2. 분할시 이전대상 선택의 범위

### (1) 프랑스에서의 논의

합병의 경우에는 한 회사(소멸회사)가 전체 자산 및 부채를 다른 회사(존속회사)에 이전하는 것이므로 이전대상 자산 및 부채를 선별하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그러나 분할의 경우 영업부문이 분리되는 것이므로 항상 이전범위와 선택문제가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분할회사가 동일한 영업에 관한 자산과 부채를 별도로 분리하여 분할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예컨대 어떤 자산은 A승계회사에 이전하는 반면 이 자산 취득을 위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B승계회사로 이전시키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문제이다.

프랑스에서는 대체로 협의의 분할이든 일부영업의 포괄출자이든 이러한 형태의 분사도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가 많은 듯하다. 즉 프랑스 상법 제236-21조가 협의의 분할시의 재산분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부채를 분배함에 있어서 관련자산을 고려하지 않아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sup>34)</sup> 프랑스 상법 제236-22조가 당사자들의 합의(commun accord) 이외에 별다른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이전대상 선별에 큰 제한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sup>35)</sup>

다만 사해행위 취소(fraude paulienne)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예컨대 이 분할이 채무자를 분할회사에서 변제자력 없는 회사로 대체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이거나, 채권자와 다른 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예컨대 위 예에서 채권자가 자산 이전에 관한 사전승인을 규정한 경우) 등에는

33) 예컨대 이철송, 앞의 책, 894쪽.

34) Paul Le Cannu et Bruno Dondero, *op. cit.*, p.1048.

35) Pierre-Yves Chabert, *op. cit.*, p.762.

이러한 이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sup>36)</sup>

## (2) 우리 법체제와의 비교

우리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은 “...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란 승계회사(신설회사)가 인수한 영업에 관련하여 발생한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sup>37)</sup> 이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은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는 그것이 분할기준일 후부터 분할 전까지 발생한 것이라도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연체임료채무는 대우중공업이 신설회사인 피고에게 출자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과 동일한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라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고,<sup>38)</sup> 대구고등법원은 “.. 분할 전의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기로 정한 것이 아니라, 아예 분할 전의 회사의 모든 채무를 승계하지 않기로 정한 것이어서 연대책임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상법 제530조의9 제2항,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상법 제527조의5에 정한 채권자보호절차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할 것이므로..”라고 판시한 바 있다.<sup>39)</sup> 그러나 분할회사의 의사

36) Paul Le Cannu et Bruno Dondero, *op. cit.*, p.1048.

37) 대법원은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승계한 영업에 관한 채무로서 당해 영업 자체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채무 뿐만 아니라 그营业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적극 재산과 관련된 모든 채무가 포함된다”(2010. 8. 19. 선고 2008다92336판결), “출자한 재산이라 함은 분할되는 회사의 특정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 일체성을 가진 영업, 즉 특정의 영업과 그 영업에 필요한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2010. 2. 25. 선고 2008다74963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38)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7191 판결.

39) 대구고등법원 2006. 4. 14. 선고 2005나1484 판결. 이밖에 김동민, “회사분할에서 수혜회사에 승계되는 영업재산의 범위와 연대책임 배제의 한계”, 『상사판례연구(VII)』, 박영사, 2007, 162쪽에서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26380 판결(미공간)에서도 “신설회사 또는 존립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를 전혀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는 상법 제530조의9에 위반한 것이어서 상법 제527조의5에 정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자에 대한 관

를 불문하고 일정 채무가 승계회사에 당연히 ‘이전’(내지 귀속)된 것으로 보는 법원의 태도는 비판의 소지가 많다.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은 그 표현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책임의 발생 및 배제에 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sup>40)</sup> 위 프랑스법에서도 연대책임의 발생 등은 별론으로 하고 분할시 자산, 부채 분배에 관한 당사회사들의 자치를 인정하고 있다.

### 3. 각종 제재의 승계 여부

분할 또는 합병에 포괄승계효과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신전속적 법률관계인 경우 승계가 제한된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각종 제재 및 이에 따른 책임 내지 의무의 승계여부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른 과징금이 분할시에 승계되는지에 관한 논란이 제기된바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이러한 제재 유형은 다양하고 분할, 합병시 효과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하에서는 그 대표적인 몇 유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시사점을 검토하기로 한다.

#### (1) 형벌의 경우

한편 프랑스 법제상 형사책임(résponsabilité pénale)의 경우 포괄승계효과 인정되지 않는다.<sup>41)</sup> 이는 판례, 학설에 의하여 확립된 것인바,<sup>42)</sup> 프랑스 형법 제121-2조, 유럽인권협약(la Convention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에 의하여 인정되는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personnalité des

---

계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라는 표현이 나온다.

40) 상제는 노혁준, 회사분할시의 채권자 보호, 『BFL』 38호 (2009).

41) Bruno Dondero, *op. cit.*, p.233; Philippe Merle, *op. cit.*, p.897; Paul Le Cannu et Bruno Dondero, *op. cit.*, p.1042.

42) 이에 관한 대표적 판례로 Cass. crim. 14 oct. 2003 n° 4992 FSPF, X. 이에 대한 평석으로는 Jean-Francois Barbiéri, Note - Responsabilité pénale des personnes morales: incidence d’une fusion sur la responsabilité de la société absorbée, *Bulletin Joly Sociétés*, 01 fev. 2004 n° 2, p.265 (2004); Bernard Bouloc, La fusion-absorption et la responsabilité pénale, *Revue des sociétés* n° 1/2004 (2004) 참조.



peines)'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분할, 합병시까지 아직 형벌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는 물론이고, 이미 형벌이 부과된 이후에 분할,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해된다. 프랑스 형법 제133-1조에 따르면 법인 해산 시 형벌도 소멸되지만, 청산의 종결시까지 벌금형 등을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회사 소멸과 함께 이러한 형벌의 효력도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sup>43)</sup>

## (2) 경쟁당국에 의한 제재인 경우

프랑스 경쟁법 영역에 있어서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행위주체가 소멸된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는 경제적, 기능적 연속성의 원칙(*le principe de la continuité économique et fonctionnelle*)이다. 이에 따르면 경쟁당국은 합병, 분할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적, 기능적 실체를 유지하고 있는 주체를 제재할 수 있게 된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서 2007년의 제재금(*l'amende*)<sup>44)</sup> 부과사례가 있다.<sup>45)</sup> 프랑스의 구 경쟁위원회(*Conseil de la concurrence*)<sup>46)</sup>는 Hérault 지역의 Montarnaud 중학교 (*collège de Montarnaud*) 건축과 관련하여 수 개의 건축업자들에게 금전적 제재(*sanction pécuniaire*)로서의 제재금 부과처분을 내렸다.<sup>47)</sup> 당시 문제되었던 행위는 경쟁입찰자들 사이의 정보교환(*entente des échanges d'informations intervenant entre concurrents*)이었다. 제재대상 회사들 중 Eiffage Construction Langue doc사

43) 반면 형벌 중 벌금(*peine d'amende*)의 선고로 인해 발생한 (소멸회사의) 벌금납부의무가 존속회사에 승계될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서 Paul Le Cannu et Bruno Dondero, *op. cit.*, p.1042 참조. 이에 따르면 위 형법 제133-1조는 청산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합병시에는 청산절차가 없으므로 벌금납부의무에 포괄승계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한다.

44) *l'amende*는 일반적으로 벌금으로 해석되지만, 우리나라의 과징금, 범칙금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여기에서는 이를 제재금으로 번역하기로 한다.

45) CA Paris, 1<sup>er</sup> ch. H, 23 Octobre 2007 N° 2006/07494.

46) 구 경쟁위원회는 2008년 경제현대화법(*la loi de modernisation de l'économie n° 2008-776 du 4 août 2008*)에 의하여 경쟁감독청(*l'Autorité de la concurrence*)로 승계되었다.

47) Cons. conc., décision. n° 06-D-08, 24 mars 2006. 결정문 원문은 <http://www.autoritedelaconcurrence.fr/pdf/avis/06d08.pdf>에서 확인 가능하다.

는 정보교환의 증거부족, 제재금의 액수 등을 다투었고, 나아가 원래 위법행위를 하였던 Auxial Construction사가 그 이후 위 Eiffage사로 흡수합병되어 소멸되었으므로 별도의 회사에 대하여 제재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위 승계여부에 관한 쟁점이다. 파리 항소법원은 위 경제적, 기능적 연속성의 원칙을 다시 확인하면서 소멸회사에 의해 이루어진 반경쟁행위의 책임을 존속회사에 물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접근법은 경쟁법 문제에 있어서 이제 전형적인 해결방식으로 (des solutions classiques du droit de la concurrence) 인식되고 있으며,<sup>48)</sup> 그 바탕에는 경쟁법상 규제의 특수성도 고려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49)</sup> 즉 경쟁법상의 제재의 대상은 법인(les personnes morales)이 아니라 기업(l'entreprise)이다.<sup>50)</sup> 따라서 법원은 가격과 경쟁의 자유에 관한 1986년 오르도낭스<sup>51)</sup>의 대상에는 직접 위법행위를 한 주체 뿐 아니라 이를 대체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sup>52)</sup> 위의 판례를 포함하여 실제 사례는 주로 합병과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법리는 분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sup>53)</sup>

#### (4) 금융감독기구에 의한 제재인 경우

위 공적의무들과 달리 금융감독기구에 의한 제재의 승계 여부에 관하여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 프랑스의 사법제도는 일

48) Geoges Decocq, Qui fusionne "hérite" de l'entente!, *Contrats Concurrence Consommation* n° 12, Décembre 2007, comm.306 (2007).

49) Alaia Viandier, note CA Paris, ch. écon. et fin., 14 mai 1997, *La Semaine Juridique (JCP)* Éd. G. II, 22898 (1997), p.380 참조.

50) 상세한 논의에 대하여는 Linda Arcelin, *L'entreprise en droit de la concurrence français et communautaire*, LITEC (2003); Marie-Anne Frison-Roche et Marie-Stéphane Payet, *Droit de la concurrence*, Dalloz (2006) pp.43-46.

51) Ordonnance n° 86-1243 du 1 déc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52) CA Paris 1<sup>re</sup> ch. 19 nov. 1992. RJDA 1993, p.122.

53) Louis Vogel, *Droit français de la concurrence: Collection JuriScience* 2006, LawLex (2006), pp.239-241.

반법원(juridiction judiciaire)과 행정법원(juridiction administrative)으로 구성되는 이원적 체제인바, 각 최고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파기원(Cour de cassation)과 콩세유데따(Conseil d'État)가 상이한 입장을 취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먼저 파기원의 (협의의) 분할 관련 사례를 살펴본다.<sup>54)</sup> 구 증권거래위원회(COB: la commission des opérations de bourse)는 1995. 5. 12.부터 CIP(Compagnie Immobilière Phénix)사를 상대로 조사절차를 진행해 왔다. 당시 문제된 것은 1991년 이래 위 회사가 위원회 행정입법(réglement) n° 90-02을 위반해 왔다는 것이었는바, 위 행정입법은 상장회사에 의해 배포되는 정보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CIP사는 그 1인 주주인 Anjou Immobilier et Services사(이후에 Compagnie Générale d'Immobilier et Services사가 됨)의 동의 하에 분할절차를 밟아 1995. 12. 8. 해산하게 되었다. 그 재산은 분할과정에서 7개 회사에 분배되었다. 이러한 통보를 받게 된 위원회는 이후 내부 회의과정을 거쳐 1996. 9. 12. 위 7개 회사들에 대하여 금전적 제재(sanction pécuniaire)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위 회사들은 위 제재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 및 파기원은 위 금전적 제재 내지 행정적 제재(sanction administrative)에 대하여도 형벌의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아<sup>55)</sup>

---

54) Cass. com., 15 juin 1999, n° 1237P. 원심판결은 CA Paris, ch. écon. et fin., 14 may 1997. 이에 관하여는 많은 평석이 나와 있다. 원심 판결에 관한 평석으로서 Alaia Viandier, *op. cit.*; Michel Germain et Marie-Anne Frison-Roche, *Actualité: Droit des opérations sur capital, Revue de droit bancaire et de la bourse*, n° 61 (1997); Nicolas Rontchevsky, *Personnalité des poursuites et des sanctions, Bulletin Joly Bourse*, 01 juillet 1997 n°4 p.646 (1997). 파기원 판결에 관한 평석으로서 David Vatel, *L'application du principe de personnalité des poursuites et des peines aux sanctions prononcées par la commission des opérations de Bourse, Revue des sociétés* p.844 (1999); Nicolas Rontchevsky, *Application par la Cour de cassation du principe de la personnalité des poursuites et des sanctions aux sanctions administratives pécuniaires prononcées à l'encontre des personnes morales, Bulletin Joly Bourse*, 1 novembre 1999 n°6, p.579 (1999).

55) 형벌의 자기책임의 원칙의 근거가 되는 유럽인권협약 제6조가 자연인, 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그 형벌의 종류 또한 구분하지 않고 있다. 법원은 증권거래위원회에 의한 제재의 중대성(importance des sanctions)과 공시(publicité)를 고려하여 위 금전적 제재에 처벌적인(répressive) 성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Alaia Viandier,

위 부과결정을 취소하였다. 소송과정에서 구 증권거래위원회는 위법행위를 한 기업의 연속성을 강조하였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은 경쟁법에서나 가능한 법리로서 이 사건에 확장시킬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구 증권거래위원회는 정책적인 측면, 즉 분할을 통해 제재를 피할 수 있다면 분할법제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도 주장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사기적 행위에 이른 경우에는 분할자체를 취소할 수 있음<sup>56)</sup>을 전제로 “증권거래위원회는 CIP사가 그 분할 및 해산절차를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진행하였다는 점과 이 회사가 거래를 무효화시킬 정도의 사기적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시하였다.

다음으로 콩세유데따의 합병 관련 사례이다.<sup>57)</sup> 이는 구 금융시장원(CMF: le Conseil des marchés financiers)에 의한 제재관련 사건이다. 위 금융시장원은 금융기관 규제 및 투자자보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는데,<sup>58)</sup> Dynabourse사가 금융시장원의 일반 행정입법(réglement generale) 제5-2-11조에 위반하여 공개매수기간 종결 후 주식제출을 철회한 행위가 문제되었다.<sup>59)</sup> 위 회사는 이후 Crédit Agricole Indosuez Cheuvreux사에 흡수합병되었으나, 구 금융시장원은 1999. 1. 27. 위 존속회사를 상대로 위 소멸회사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제재를 부과하였다. 구체적으로 (i) 금전적 제

---

*op. cit.*

- 56) 프랑스 법제에서 분할이 사기적 행위였음이 사후에 밝혀진 경우 (i) 분할 자체를 취소하는 방식과 (ii) 이러한 거래 자체는 유지하되 정당한 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한다. Nicolas Rontchevsky, *Personnalité des poursuites et des sanctions*, *Bulletin Joly Bourse*, 1 juillet 1997 n°4, p.646 (1997).
- 57) Conseil d'État, 22 novembre 2000, n° 207697. 이에 관한 평석으로서 Matine Boizard, *Condamnation par le Conseil des marchés financiers d'une société absorbante pour manquements de la société absorbée*, *Le Dalloz: Recueil*, AJ p.237 (2001); Arnaud Reygrobellet, *La société absorbante doit payer l'amende pour un manquement imputable à la société absorbée*, *Le Dalloz: Recueil*, somm. p.1609 (2001).
- 58) 금융시장 규제에 관한 권한은 위 두 기관 이외에 CDGF(Conseil de discipline de la gestion financière)도 수행하고 있었는데, 2008. 8. 1. 금융안전에 관한 법률(la loi n° 2003-706 de sécurité financière du 1er août 2003)에 따라 위 세 기관이 통합되어 금융시장감독청(AMF: l'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이 설립되었다. <http://www.amf-france.org> 참조.
- 59) 당시 Allianz사가 Assurances Générales de France(AGF)의 주식 및 전환사채에 대해 공개매수를 시도하였는데, Dynabourse사의 담당자는 그 관리 하의 4,089,000주에 관하여 공개매수에 응하였다가 매수기간 종료 후 이를 철회하였다.

재(*sanction pécuniaire*)로서 8,000만 프랑의 제재금(*l'amende*)을 부과함과 동시에 별도로 (ii) 징계처분(*blâme*)을 내렸다.<sup>60)</sup> 콩세유데따는 위 징계처분은 취소하면서도, 제재금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특히 금전적 제재에 관한 양 법원의 결론은 상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판결의 사안이 합병과 분할로서 차이가 있지만, 양자에 유사한 포괄승계효를 인정하는 프랑스 법제에서 그러한 차이가 위 결론의 차이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sup>61)</sup> 구 증권거래위원회와 구 금융시장원에 의한 제재의 성격 차이도 확실, 판례상 분명하지 않다.<sup>62)</sup> 위 콩세유데따의 입장을 옹호하는 견해에 따르면 위 증권거래위원회와 금융시장원의 제재는 전통적인 형사적 제재(*sanctions pénales*)가 아니라 규율적 제재(*sanctions régulatrices*)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기도 한다.<sup>63)</sup> 특정 위법행위를 벌하고자 하는 전자와 달리 후자는 시장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바, 증권거래위원회와 금융시장원의 제재는 시장의 완결성(*intégrité*)와 투명성(*transparence*)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분할, 합병시의 승계회사, 존속회사에 대하여도 내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위 증권거래위원회의 결론을 지지하는 입장은 분할, 합병시의 포괄승계 개념에는 그 한계가 있는바 종전의 회사가 부담하던 책임(*responsabilité*)는 그것이 형사적(*pénale*)인 것이든 행정적(*administrative*)인 것이든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자기책임의 법리에 부합한다고 본다.<sup>64)</sup> 위 콩세유데따의 입장에 따르면 제재를 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분할, 합병을 막을 수 있을 것이지만, 실제로 이러한 사기적 거래의 위험

---

60) 그 제재권한은 la loi de modernisation des activités financières du 2 juillet 1996 제69조 제2항에 의해 부여되어 있었다.

61) Matine Boizard, *op. cit.*, p.239. 하지만 콩세유데따가 위 판결에 대하여 배포한 보도자료(*le communiqué de presse*)는 파기원과의 결론 차이의 이유로 합병과 분할의 상이함을 강조하고 있다. (<http://www.conseil-etat.fr/cde/node.php?articleid=562> 참조). 위 자료는 그밖에 경쟁법에 있어서 제재금 승계를 인정한 프랑스 판례, 로마협약 81C를 위반한 경우 책임의 승계가능성을 시사한 유럽법원(*la Cour de justice des communautés européennes*) 등을 언급하고 있다.

62) 위 보도자료에도 위 제재 성격의 차이점에 대하여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63) Arnaud Reygrobellet, *op. cit.*, p.1610.

64) Alaia Viandier, *op. cit.*



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sup>65)</sup>

#### (5) 우리 법체제와의 비교

우리나라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납부책임의 승계여부가 대법원에서 문제된바 있다. 공정거래법 제55조의3 제2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5조의5는 과징금이 부과된 후 분할된 경우 관련 회사들의 과징금 연대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분할 이전의 행위에 관해 분할회사의 영업을 승계한 회사(들)에 대하여 분할 이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해석에 별다른 조항이 없다. 대법원은 2007년 대우중공업 주식회사의 분할로 인해 설립된 회사에 관련된 부당공동행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sup>66)</sup> 즉 “...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되기 전까지는 단순한 사실행위만 존재할 뿐 그 과징금과 관련하여 분할하는 회사에게 승계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대하여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 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 납부책임은 합병의 경우에는 승계되지만,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시점까지 과징금이 구체화되는지 여부에 따라 승계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이러한 법리는 그 이후의 판결에서도 다시 확인되고 있다.<sup>67)</sup>

프랑스 법제에서도 각종 금전적인 제재의 성격은 다기한 것이고, 우리 과징금 등과의 비교는 이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65) Alaia Viandier, *op. cit.*에 의하면 분할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거래이고, 법인의 책임이 소멸되는 경우 관련된 개인의 책임이 문제될 여지가 높아지므로 실제 회피적 목적의 분할거래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66)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8928판결

67)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7035판결



상세한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분할의 경우에도 당해 영업에 관하여는 부분적인 포괄승계 내지 일부 합병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합병과 분할을 전혀 달리 취급하는 현재의 접근법은 논란의 소지가 크다.<sup>68)</sup>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랑스 법제에서도 합병과 분할에 따라 그 공적 의무의 승계범위에 큰 차이를 두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접근법에 대하여는 분할을 통해 실질적으로 과징금을 회피할 길을 열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징금 부과절차의 진행 정도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내려지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우리 법원의 해석은 공정거래법에서 합병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분할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있는 데에서도 기인하고 있는바, 분할에 대하여도 합병과 마찬가지로 승계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IV. 분할의 회사채권자에 대한 영향

### 1. 협의의 분할인 경우

프랑스 상법 제236-20조에 따르면, 분할로 인해 분할회사의 사업재산을 이전받은 승계회사들은 분할회사의 채무(그것이 회사채이든 다른 일반 채무이든)에 관해 상호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연대책임 여부 등이 문제되는 것은 분할이 공시되기 이전에 발생한 채권에 한한다.<sup>69)</sup> 한편 상법 제236-21조는 분할계약상의 명시조항을 통해 이러한 연대책임을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연대책임의 배제는 명확히 표현되어야 하며 부채들을 세밀하게 명시하여 어떤 회사가 어떤 책임을 질지 밝혀야 한다.<sup>70)</sup>

68) 한편 합병과 분할의 차이점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접근법에 찬성하는 견해로서 이황, 회사분할과 과징금 납부책임의 승계가능성, 『고려법학』 53호 (2009), 231-233쪽 참조.

69) Paul Le Cannu et Bruno Dondero, *op. cit.*, p.1055; Philippe Merle, *op. cit.*, p.904; 프랑스 상법 제236-21조 제2항, 제236-14조 제2항.

70) Paul Le Cannu et Bruno Dondero, *op. cit.*, p.1048.

연대책임이 배제되는 경우 개별채권자들은 이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프랑스 상법 제236-21조).<sup>71)</sup> 확실하고, 확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créances certaines, liquids et exigibles*)인 경우에만 이러한 이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신청을 기각하거나 또는 당사회사들에게 채무상환(*remboursement*) 내지 담보(*garanties*)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프랑스 상법 제236-21조 제2항, 제236-14조 제2항).<sup>72)</sup> 위 이의제기는 분할절차의 진행을 막지는 못한다(프랑스 상법 제236-21조 제2항, 제236-14조 제4항).

한편 승계회사의 채권자들의 경우에도, 분할을 통하여 새로운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이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프랑스 상법 제236-21 제2항 참조).<sup>73)</sup>

실제로는 연대책임 배제조항이 포함된 경우에도 분할회사 채권자들이 위 이의권을 행사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한다. 법원 주도로 진행되는 절차가 너무 번잡할 뿐 아니라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일 것을 요구하는 등 그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sup>74)</sup> 따라서 모든 채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연대책임제와 비교할 때 위 이의제도는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sup>75)</sup>

## 2. 일부영업의 포괄출자인 경우

### (1) 문제의 소재

일부영업 포괄출자의 근거인 프랑스 상법 제236-22조는 협의의 분할에 관한 제236-16조 내지 제236-21조에 의해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

71) 이 조항은 이의권의 주체를 사채권자가 아닌 채권자들(*les créanciers non obligataires*)로 한정하고 있다

72) 만약 이러한 상황 또는 담보제공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그러한 분할은 당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제236-21조 제2항, 제236-14조 제3항.

73) 합병의 경우에도 소멸회사의 채권자들 뿐 아니라 존속회사의 채권자들 역시 이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프랑스 상법 제236-14조 제2항). Philippe Merle, *op. cit.*, p.904 참조.

74) Paul Le Cannu et Bruno Dondero, *op. cit.*, p.1043.

75) Paul Le Cannu et Bruno Dondero, *op. cit.*, p.1049.

한다. 그 중 앞서 본 연대책임에 관한 제236-20조가 어떻게 적용될지에 관해 논란이 있다. 예컨대 분할회사의 일부 자산, 부채가 어떤 승계회사로 이전된 경우, 이전된 채무에 관한 채권자가 위 제236-20조에 의거하여 분할회사에 대해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이다.

이를 부인하는 입장은 먼저 위 조문의 문리해석을 강조한다. 제236-20조는 승계회사간의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일부영업의 포괄출자가 수 개의 승계회사들에게 이루어졌으면 적용가능성이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분할회사와 승계회사 간 연대책임을 추궁하는 근거로 전용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분할회사와 승계회사 간 연대책임은 포괄승계 법리와도 맞지 않는다고 한다. 분할회사가 그 채무를 당연 이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연대책임을 져야하는 결과는 포괄승계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나타낸다는 논리이다. 마지막으로 연대책임이 배제되더라도 채권자들은 이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sup>76)</sup> 그 보호가 미흡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sup>77)</sup>

반면 이러한 연대책임에 긍정적인 입장은 위 제236-20조의 실질적인 기능을 강조한다. 즉 이 조문은 어떤 회사의 채권자들이 거래를 전후하여 동일한 담보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이를 합목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sup>78)</sup>

## (2) 최근 판례와 관련문제

프랑스 파기원은 최근 사례에서 일부영업의 포괄출자에 있어서도 분할회사와 승계회사간 연대책임을 긍정하는 판시를 한 바 있다.<sup>79)</sup> 이 사안은

76) 채권자의 이의권은 연대책임이 배제되는 경우에만 부여되는 것이다. Philippe Merle, *op. cit.*, p.904 참조.

77) Didier Poracchia, La solidarité en cas d'apport partiel d'actif soumis au régime des scissions, *Revue des sociétés* n° 1/2007 (2007) p.78.

78) Henri Hovasse, Apport partiel d'actif soumis au régime des scissions et protections des créanciers sociaux, *Droit des sociétés* n° 3, Mars 2007, comm. 50 (2007).

79) Cass. com. 12 déc. 2006, n° 05-15.619. 이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서 Jean-Claude Hallouin, *op. cit.*; Henri Hovasse, *op. cit.*; Didier Poracchia, *op. cit.*; Jean-Jacques Caussain, Florence Deboissy et Guillaume Wicker, note Cass. com. 12 déc. 2006, no 05-15.619, *La Semaine Juridique (JCP) Entreprise et Affaires* n° 27-28 p.34 (2007) 참조.

Hydraulique PB사(이하 “P회사”라고 한다)가 Établissements Augereau(이하 “Q회사”라고 한다)에 대해 공급했던 물품 대금을 청구하는 사건이다. 원래의 물품공급 이후 Q회사는 Augereau Carrosseries사(이하 “R회사”라고 한다)에게 일부영업의 포괄출자를 하였는바, 위 물품대금채무도 이전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 P회사와 R회사 간에는 공급물품의 하자문제로 인해 다툼이 있었는바, 이후 R회사가 도산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자, P회사는 원래의 채무자였던 Q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원심인 파리 항소법원(la cour d’appel de Paris)은 출자계약에 포괄승계에 관한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았고, 연대책임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P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반면 파기원 상사부(la chambre commerciale de la Cour de cassation)는 원심을 파기하면서 “.. 분할규정을 적용을 받는 일부영업의 포괄출자에 있어서, 분할회사는 제236-21조에 의한 예외를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계회사로 이전된 채무에 관하여 승계회사와 연대하여(solidairement)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다.

이후 유사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지고 있으며,<sup>80)</sup> 이러한 입장은 학계에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81)</sup> 연대책임이 배제되더라도 이익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익권의 제대로 활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큰 설득력을 지니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sup>82)</sup> 다만 어떠한 경우에 연대책임이 배제된 것을 볼지에 대하여는 아직 논란의 소지가 있다. 특히 위 판결의 파기환송심에서 파리 항소법원은 연대책임을 배제하는 약정이 존재한 것을 볼 수 있다면 다시 P회사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sup>83)</sup> 배제약정을 너무 폭넓게 인정한 것이라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sup>84)</sup>

위 사안은 분할회사의 채무가 이전된 경우에 관한 것인바, 분할회사의

80) Cass. 2e civ. 19 févr. 2009, n° 05-22044 Cass. com, 7 oct. 2008, no 07-17.731 등

81) Jean-Claude Hallouin, *op. cit.*, p.495; Henri Hovasse, *op. cit.*

82) Paul Le Cannu et Bruno Dondero, *op. cit.*, p.1056.

83) Cour d’appel de Paris, ch. 5-5, 3 décembre 2009 n° 07-8326.

84) Didier Poracchia, La solidarité des parties à une opération d’apport partiel d’actif placé sous le régime des scissions, *Revue des sociétés*, n° 8/2010 (2010).

기존채무가 그대로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채권자는 승계회사에 대해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판례에서는 이에 관한 언급이 없지만 위 제236-20조의 목적을 고려할 때 긍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sup>85)</sup>

### 3. 우리 법체제와의 비교

우리나라에 있어서 분할시 채권자 보호방식은 기본적으로 관련회사들의 연대책임 또는 채권자이의절차에 의한다. 즉 상법 제530조의9는 관련회사들의 연대책임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일정 요건 하에 연대책임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이러한 때에는 별도의 채권자 이의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도 판례에 입장에 따르면 협의의 분할이든 일부영업의 포괄출자이든 당사회사들간 연대책임이 기본 원칙이다. 명확한 규정,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영업의 포괄출자시 이전되지 않은 채무의 채권자도 승계회사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견해가 많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한편 당사회사들이 분할계약 조항을 통해 이를 배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자들의 이의권이 발생한다는 구조도 우리와 비슷하다.

그러나 실질적인 채권자 보호의 정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더 강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첫 번째로 프랑스는 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채권자의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다. 특히 미확정이거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 관하여 이의권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많은 채권자들이 보호절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둘째로 프랑스 법원은 이러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받고 있다. 즉 법원은 채무상환, 담보제공을 명할 수도 있으나 이를 기각할 수도 있다(프랑스 상법 제236-21조 제2항, 제236-14조 제2항).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분할회사 또는 승계회사는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

---

85) Jean-Claude Hallouin, *op. cit.*, p.496; Hervé Le Nabasque, APA soumis au régime des scissions et solidarité entre sociétés apporteuse et bénéficiaire, *Bulletin Joly Sociétés: Actualité du droit des sociétés*, 01 juin. 2009 n° 6 p.578 (2009). 다만 Paul Le Cannu et Bruno Dondero, *op. cit.*, p.1056은 이러한 경우 승계회사의 기존 채권자 보호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30조의11 제2항, 제527조의5 제3항, 제232조 제3항). 따라서 법원이 관여할 여지가 봉쇄되어 있다. 셋째로 프랑스에서 채권자에 의한 이의신청은 분할절차의 진행을 막지 못한다(프랑스 상법 제236-21조 제2항, 제236-14조 제4항). 반면 우리나라는 이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분할 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들은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강하게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즉 상업등기법 제98조 제1항 제3호, 제94조 제3호에 따르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 시에는 채권자 이의절차에 따라 공고 또는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경우 분할범위에 관한 당사자의 자치를 인정하는 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법원은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는 당연히 수반되어 이전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리는 당해 채권자에게 좀더 두터운 보호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강력한 채권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이를 절대선으로 추구하는 것은 신속한 분할절차의 실행을 저해할 수 있다. 특히 분할 이후에도 변제가능성에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 등에 이의권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바,<sup>86)</sup> 프랑스 상법상 법원의 개입을 통해 이를 어느 정도 조절하려는 방식도 우리에게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 V. 결 론

프랑스에서도 분할제도가 활발하게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분할에 대한 프랑스 상법상 규제와 관련 판례는 우리에게도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주로 프랑스 법제상 분

---

86) 독일의 기업재편법 제22조 제1항 제2문, 일본 회사법 제789조 제5항 단서, 제799조 제3항 단서, 제810조 제5항 단서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보다 구체적인 논의에 대하여는 노혁준, 앞의 논문 참조.



할의 효력에 초점을 맞추어 최근의 논의를 정리해 보았다.

먼저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달리 우리 상법 제530조9 제2항을 채무의 귀속에 관한 것이 아니라 책임의 발생 및 배제에 관한 것으로 보아 분할시 자산, 부채 배분에 관한 당사자 자치를 넓게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이는 프랑스 분할법제의 태도이기도 하고,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려는 분할법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분할시 각종 제재의 승계와 관련하여 프랑스에서 각 유형별로 진행되고 있는 논의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우리 법상의 논의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의 경우, 합병과 분할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 한편 분할을 과징금 회피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유인을 배제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분할의 채권자에 대한 영향 내지 채권자 보호방식에 관하여, 우리 상법상의 강력한 보호장치가 항상 타당한 것인지에 관하여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주제어 : 분할, 포괄승계, 현물출자, 분할검사인

## 참 고 문 헌

- 노혁준, “회사분할시의 채권자 보호”, 「BFL」 38호, 2009
- 이철송, 회사법강의(제14판), 박영사, 2007
- 이 황, 회사분할과 과징금 납부책임의 승계가능성, 「고려법학」 53호, 2009
- Alaia Viandier, note CA Paris, ch. écon. et fin., 14 mai 1997, La Semaine Juridique (JCP) Éd. G. II, 22898 (1997)
- Arnaud Reygrobellet, La société absorbante doit payer l’amende pour un manquement imputable à la société absorbée, Le Dalloz: Recueil, somm. p.1609 (2001)
- Bernard Bouloc, La fusion-absorption et la responsabilité pénale, Revue des sociétés n° 1/2004 (2004)
- Bruno Dondero, Droit des sociétés, Dalloz (2009)
- David Vatel, L’application du principe de personnalité des poursuites et des peines aux sanctions prononcées par la commission des opérations de Bourse, Revue des sociétés p.844 (1999)
- Didier Poracchia, La solidarité en cas d’apport partiel d’actif soumis au régime des scissions, Revue des sociétés n° 1/2007 (2007)
- Didier Poracchia, La solidarité des parties à une opération d’apport partiel d’actif placé sous le régime des scissions, Revue des sociétés n° 8/2010 (2010)
- Dominique Vich-Y-Llado, La responsabilité pénale des personnes morales en cas de fusion, La Semaine Juridique (JCP) Entreprise et Affaires n° 20 (2001)
- Françis Lemeunier, Société anonyme (20<sup>e</sup> éd.), Déditions Delmas (2007)
- Françis Lemeunier, Société à responsabilité limitée: SARL (26<sup>e</sup> éd.), Déditions Delmas (2008)
- Henri Hovasse, Apport partiel d’actif soumis au régime des scissions et protections des créanciers sociaux, Droit des sociétés n° 3, Mars 2007, comm. 50 (2007)
- Hervé Lécuyer, Apport partiel d’actif, Droits des sociétés N° 6 juin 2006 p.16

(2006)

Hervé Le Nabasque, APA soumis au régime des scissions et solidarité entre sociétés apporteuse et bénéficiaire, Bulletin Joly Sociétés: Actualité du droit des sociétés, 01 juin. 2009 n° 6 p.578 (2009)

Jean-Claude Hallouin, Apport partiel d'actif: Régime des scissions, Solidarité entre sociétés apporteuse et bénéficiaire, Bulletin Joly Sociétés: Actualité du droit des sociétés, 01 avr. 2007 n° 4 p.492 (2007)

Jean-François Barbiéri, Note - Responsabilité pénale des personnes morales: incidence d'une fusion sur la responsabilité de la société absorbée, Bulletin Joly Sociétés, 01 fév. 2004 n° 2, p.265 (2004)

Jean-Jacques Caussain, Florence Deboissy et Guillaume Wicker, note Cass. com. 12 déc. 2006, no 05-15.619, La Semaine Juridique (JCP) Entreprise et Affaires n° 27-28 p.34 (2007)

Jean-Yves Mercier, Fusions: Apports partiels d'actif, scissions. Editions Francis Lefebvre (2009)

Geoges Decocq, Qui fusionne "hérite" de l'entente!, Contrats Concurrence Consommation n° 12, Décembre 2007, comm.306 (2007)

Laurent Vallée, Effets d'un apport partiel d'actif soumis au régime des scissions sur les obligations fiscales de l'apporteur, RTD Com p.937 (2006)

Martial Chadefaux, Les fusions de sociétés: régime juridique et fiscal (26<sup>e</sup> éd.), Group Revue Fiduciaire (2008)

Matine Boizard, Condamnation par le Conseil des marchés financiers d'une société absorbante pour manquements de la société absorbée, Le Dalloz: Recueil, AJ p.237 (2001)

Matthieu Dubertret, L'intuitus personae dans les fusions, Revue des sociétés n° 4/2006 (2006)

Maurice Cozian, Alain Viandier et Florence Deboissy, Droits des sociétés (22<sup>e</sup> éd.), LexisNexis Litec (2009)

Michel Germain et Marie-Anne Frison-Roche, Actualité: Droit des opérations sur

- capital, Revue de droit bancaire et de la bourse, n° 61 (1997)
- Michel Jeantin et Alain Viandier, Actualité/ Droit des sociétés/ Bourse, Revue de droit bancaire et de la bourse n°8 juillet/août (1988)
- Nicolas Rontchevsky, Personnalité des poursuites et des sanctions, Bulletin Joly Bourse, 1 juillet 1997 n° 4 p.646 (1997)
- Nicolas Rontchevsky, Application par la Cour de cassation du principe de la personnalité des poursuites et des sanctions aux sanctions administratives pécuniaires prononcées à l'encontre des personnes morales, Bulletin Joly Bourse, 01 novembre 1999 n° 6 p.579 (1999)
- Paul Le Cannu et Bruno Dondero, Droit des sociétés (3<sup>e</sup> éd.), Montchrestien (2009)
- Philippe Merle, Droit commercial: sociétés commerciales (13<sup>e</sup> éd.), Dalloz (2009)
- Pierre-Yves Chabert, La figure de la scission partielle en droit français, Revue des sociétés n° 4/2005 (2005)
- Patrice Couturier, Cessions & acquisitions d'actifs: Restructurations d'entreprises, EFE (2010)

## The Regulation on “*Scission*” in France: Current System and Its Effect

Rho, Hyeok-Joon\*

The French system on corporate division (*scission*) has been known to influence the Korean Commercial Code as well as the EU sixth Directive concerning the division of public limited liability companies. The research on French regulation over corporate division, however, has rarely been made in Korea.

Since the adoption of rules on corporate division by the Korean Commercial Code in 1998, more and more spin-offs, hive-downs or split-ups have been witnessed in Korean practice. Those transactions were often followed by legal disputes over how to protect corporate creditors and/or whether to impute administrative sanctions to the succeeding corporation in such spin-offs, etc. This paper aims to review legal practice in France concerning the “scission” and, through a comparative research, to explore some insights applicable to Korean practice. Especially, the “effect” of the french scission is principally addressed.

It proceeds as follows: for basic information, it begins with the concept and types of corporate division in France (Ch. II). The next two chapters are devoted to the analysis on effects of the french corporate division, including the scope of universal transfer and its limit (Ch. III) and the status of corporate creditors in a french scission. (Ch. IV). The final chapter is a conclusion.

**Key Words** : Division (*scission*), Universal Transfer (*transmission universelle*), Contribution in Kind (*aport en nature*), Commissioner of Demerger (*commissaire à la scission*)

---

\* Associate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hjoon@snu.ac.kr)